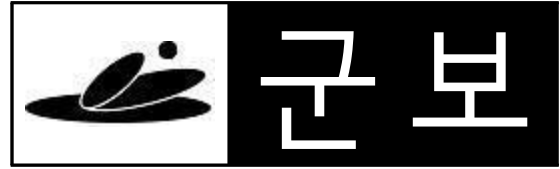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97호 2023. 3. 30.(목)

훈 령

- 예산군 훈령 제342호 : 예산군 공간정보 보안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예 규

- 예산군 예규 제32호 : 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11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3-72호 :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9
- 예산군 고시 제2023-73호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2
- 예산군 공고 제2023-74호 :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23
- 예산군 고시 제2023-77호 :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고시 24
- 예산군 공고 제2023-82호 : 군관리계획(중앙·예산·9호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 27
- 예산군 공고 제2023-83호 :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8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553호 : 예산 군계획시설산영역사공원 도로(소) 3-88호선 사업 공사원료 공고 40
- 예산군 공고 제2023-560호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따른 열람공고 41

회									
람									

예산군 공간정보 보안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3월 30일

예산군 훈령 제342호

예산군 공간정보 보안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산군 공간정보 보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를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3조 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 위성영상 중 공개제한 등급란과 공개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위성영상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별표 1 그 밖의 공간정보 공개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공간정보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주소정보 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 시설명칭 및 시설명이 포함된 도로명 등을 제외한 주소정보 안내도
--------------	--------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 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그 밖의 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주소정보 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 시설명칭 및 시설명이 포함된 도로명 등을 제외한 주소정보 안내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u>별표1</u>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u>별지 제1호 서식</u>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 ----- ----- <u>별표1</u>----- ----- ----- ----- ----- <u>별지 제1호서식</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별지 제1호서식</u>----- -----.</p>
<p>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u>별지 제2호 서식</u>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p> <p>② (생략)</p>	<p>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별지 제2호서식</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생략)</p> <p>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u>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u>」</p>	<p>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u>」</p>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절차·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2와 같다.

제2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군수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

제13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

제2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3호서식-----
-----.

④ -----
----- 별지 제4호서식-----
-----.

제2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사고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7조(보안관리규정) ① (생략)

3호서식-----
--.

제26조(보안사고 조치) ① -----

-.

1. 법 제33조제1항-----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안관리규정) (현행 제1항과 같음)

		<p>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 기록유지</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p> <p>-----</p> <p>-----</p> <p>-----</p> <p>-----</p> <p>○ <u>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u></p>
--	--	---	--	--

현 행			개 정 안		
그 밖의 공간 정보	공 개	○ <u>도로명</u> 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 시설명칭 및 시설명이 포함된 도로명 등을 제외한 <u>도로명주소</u> 안내도	그 밖의 공간 정보	공 개	주소정보----- ----- ----- -----주소 정보-----

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3월 30일

예산군 예규 제32호

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 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예산군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告知)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

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 제목(녹음 제목), 녹화일 (녹음일), 녹화내용 (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 신고 및 장애 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군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정’ 관리책임자: 사용부서 부서장
2. ‘부’ 관리책임자: 사용부서 주무 팀장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 및 담당 공무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

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등의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USB, C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및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군

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장비 도입·운영 의무화(‘23.4.1.)됨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권익 보호 (안 제1조 ~ 제3조)
-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 기기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 기록물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4조)

예산군고시 제2023-72호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예산군 고시 제2022-52호(2022. 03. 3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 군 계획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30.

예 산 군 수

1.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가.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 계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세부조성계획변경사업

다.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업면적 : 2,300m²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공주대학교총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구분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2022년 3월 30일(실시계획인가일)	2022년 12월 31일	
변경	2022년 3월 30일(실시계획인가일)	2023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단위:m²)

순번	주소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주	비고
1	예산읍	대회리	1	학교	317,269	317,269	교육부	
2	예산읍	대회리	1-3	"	917	917	"	
3	예산읍	대회리	11-2	"	9,712	9,712	교육부외 1인	
4	예산읍	대회리	11-3	"	900	900	"	
		소 계			328,798	328,798		
5	대흥면	갈신리	1	학교	187,233	187,233	"	
6	대흥면	갈신리	5	답	235	235	전봉규	
7	대흥면	갈신리	7	전	198	198	김보현	
8	대흥면	갈신리	8-4	임야	15,278	15,278	교육부외 1인	
9	대흥면	갈신리	10	"	952	952	전봉규	
10	대흥면	갈신리	산52	임야	22,471	8,921	교육부외 7인	
11	대흥면	갈신리	산52-1	"	1,132	1,132	교육부	
12	대흥면	갈신리	산53	"	46,710	46,710	"	
	소 계				274,209	260,659		
	계		(12필지)		603,007	589,457		

예산군 고시 제2023-73호**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예산군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예산읍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공사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건축물 추가 신축 3,526㎡ 건축 면적 2427.92㎡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변경)

(변경전) 2021. 4. 23. ~ 2022.12.31.

(변경후) 2021. 4. 23. ~ 2023.12.31.

마.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번호	번지	지목	지점적 (㎡)	편입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298	대	97858.3	3,526	예산군					

예산군 고시 제2023-74호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문화가 있는 쾌적한 농촌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
를 위한 신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 시행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예 산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
- 2. 사업의 목적 : 문화가 있는 쾌적한 농촌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규 농촌마을 조성
- 3. 사업비 : 8,107백만원(지원금 1,296, 자부담 6,811)(**변경**)
-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산3-1번지 일원
 - 나. 면 적 : 24,996㎡(**변경**)
 - 다. 사업내용 : 전원주택 34세대 조성
- 5. 사업시행자 : (주)황계지구신규마을
-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2023년(4개년)
-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지번					
1	신양면 황계리	산3-1	임	24,996	24,996	황계지구신규마을 정비조합 외 구성원	동의

- 8.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 041-339-7570)

예산군 고시 제2023-77호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고시

예산군의회(의안 제000호)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예 산 군 수

□총 예 산 액	_____	785,368,429천원
□일 반 회 계	_____	742,515,711천원
1. 세 입		742,515,711천원
가. 지 방 세	_____	65,400,000천원
나. 세 외 수입	_____	18,728,406천원
다. 지방교부세	_____	321,570,000천원
라. 조정교부금	_____	25,066,838천원
마. 보 조 금	_____	303,661,055천원
바. 보전수입등내부거래	_____	8,089,412천원
2. 세 출	_____	742,515,711천원
가. 일반공공행정	_____	42,627,816천원
나. 공공질서및안전	_____	26,250,499천원
다. 교육	_____	3,664,752천원
라. 문화및관광	_____	55,717,755천원
마. 환경	_____	99,279,821천원

바. 사회복지	168,703,774천 원
사. 보건	13,321,136천 원
아. 농림해양수산	141,415,409천 원
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621,911천 원
차. 교통및물류	35,743,891천 원
카. 국토및지역개발	44,682,734천 원
타. 예비비	4,446,549천 원
파. 기타	90,039,664천 원
□ 특별회계	42,852,718천 원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180,600천 원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572,281천 원
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98,397천 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2,200천 원
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18,844천 원
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598,186천 원
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49,975천 원
8.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645,002천 원
9.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8,377,118천 원
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115천 원

예산군 고시 제2023 - 82호

군관리계획(중앙·예산·9호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및 주교리,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위치한 중앙공원, 예산공원, 9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산림녹지과(☎ 041-339-76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등에게 보입니다.

2023. 3. 30.

예 산 군 수

1. 공원위치

- 중앙공원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02-1번지 일원
- 예산공원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22번지 일원
- 9호근린공원 :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53번지 일원

2. 공원면적

- 중앙공원 : 201,964m²
- 예산공원 : 29,823m²
- 9호근린공원 : 33,468m²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 대부분 20년 전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이용행태와 맞지 않는 시설이 많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심에 있는 기조성 노후된 공원의 선도적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녹지 여가공간 조성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중앙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계		201,964	100.00%
시설부지면적	기 정	12,743	6.31%
	변 경	14,013	6.94%
녹지면적	기 정	189,221	93.69%
	변 경	187,951	93.06%

나. 세부시설 총괄표(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201,964	100.00	법 : 40%이하
시설면적	기정	12,743	6.31	
	변경	14,013	6.94	증)1,270
도로및광장	기정	5,541	2.74	
	변경	10,003	4.95	증)4,462
조경시설	기정	4,717	2.33	
	변경	-	-	감)4,717
휴양시설	기정	659	0.32	
	변경	574	0.29	감)85
운동시설	기정	980	0.49	
	변경	1,634	0.81	증)654
교양시설	기정	834	0.42	
	변경	351	0.17	감)483
편익시설	기정	12	0.01	
	변경	1,451	0.72	증)1,439
녹지 및 기타	기정	189,221	93.69	
	변경	187,951	93.06	감)1,270

다.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증감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01,964	201,964	12,743	14,013	증)1,270	1	-	12	-	12	-	
도로 및 광장	소계		5,541	10,003	5,541	10,003	증)4,462	-	-	-	-	-	-	
	도로		5,241	10,003	5,241	10,003	증)4,762	-	-	-	-	-	-	
	진입광장		300	-	300	-	감)300	-	-	-	-	-	-	
조경 시설	소계		4,717	-	4,717	-	감)4,717	-	-	-	-	-	-	
	꽃담산책정원		2,196	-	2,196	-	감)2,196	-	-	-	-	-	-	
	야생초화원		2,521	-	2,521	-	감)2,521	-	-	-	-	-	-	
휴양 시설	소계		659	574	659	574	감)79	-	-	-	-	-	-	
	전망쉼터1	가-1	283	189	283	189	감)94	-	-	-	-	-	-	
	전망쉼터2	가-2	-	79	-	79	증)79	-	-	-	-	-	-	
	데크쉼터	나	376	-	376	-	감)376	-	-	-	-	-	-	
	휴게쉼터	다	-	148	-	148	증)148	-	-	-	-	-	-	
	숲속쉼터1	라-1	-	43	-	43	증)43	-	-	-	-	-	-	
	숲속쉼터2	라-2	-	66	-	66	증)66	-	-	-	-	-	-	
	숲속쉼터3	라-3	-	49	-	49	증)49	-	-	-	-	-	-	
	전망대	1	-	-	-	-	-	-	-	-	-	-	-	
	진통정자	2	-	-	-	-	-	-	-	-	-	-	-	
	파고라	3	-	-	-	-	-	-	-	-	-	-	-	
	평상	4	-	-	-	-	-	-	-	-	-	-	-	
	스탠드의자	5	-	-	-	-	-	-	-	-	-	-	-	
	벤치	6	-	-	-	-	-	-	-	-	-	-	-	
운동 시설	소계		980	1,634	980	1,634	증)654	-	-	-	-	-	-	
	시니어운동놀이터		마	364	-	364	증)364	-	-	-	-	-	-	
	주민운동시설1		바-1	980	1,008	980	증)28	-	-	-	-	-	-	
	주민운동시설2		바-2	-	262	-	증)262	-	-	-	-	-	-	
체력단련시설		7	-	-	-	-	-	-	-	-	-	-		
교양 시설	소계		834	351	834	351	감)483	-	-	-	-	-	-	
	숲속음악당		사	207	-	207	증)207	-	-	-	-	-	-	
	유아숲체험원		아	144	-	144	증)144	-	-	-	-	-	-	
	숲속생태강의장			834	-	834	감)834	-	-	-	-	-	-	
	야외무대		8	-	-	-	-	-	-	-	-	-	-	
유아숲체험시설		9	-	-	-	-	-	-	-	-	-	-		
편익 시설	소계		12	1,451	12	1,451	증)1,439	1	-	12	-	12	-	
	주차장1		자-1	-	1,318	-	증)1,318	-	-	-	-	-	-	
	주차장2		자-2	-	25	-	증)25	-	-	-	-	-	-	
	주차장3		자-3	-	108	-	증)108	-	-	-	-	-	-	
	화장실		-	12	-	12	감)12	1	-	12	-	12	-	
	관리사무소		10	-	-	-	-	-	-	-	-	-	-	
	이동식화장실		11	-	-	-	-	-	-	-	-	-	-	
	음수전		12	-	-	-	-	-	-	-	-	-	-	
먼지떨이기		13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89,221	187,951	-	-	감)1,270	-	-	-	-	-	-	

라.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계				2,458	5,241				
변경					5,012	10,003				증)4,762
기정	소계				1,073	2,248	진입로			
변경					1,111	2,360	진입로			증)112
기정	소로	3	진-1	4	48	193	진입로	동측진입부	야생초화원	
변경	소로	3	진-1	3.5~8.0	361	908	진입로	동측경계	진망쉼터-1	증)715
기정	소로	3	진-2	2	95	191	진입로	서측진입부	체육공원	
변경	소로	3	진-2	3.0	67	185	진입로	북측경계	주민운동시설-2	감)6
기정	소로	3	진-3	2	224	449	진입로	서측진입부	예산진망쉼터	
변경	소로	3	진-3	1.5	62	93	진입로	서측경계	산책로15	감)356
기정	소로	3	진-4	2	218	437	진입로	야생초화원	서측진입부	
변경	소로	3	진-4	1.5	119	418	진입로	서측경계	산책로13	감)19
기정	소로	3	진-5	2	345	192	진입로	서측진입부	숲속생태강의장	
변경	소로	3	진-5	1.5	29	43	진입로	서측경계	진입로4	감)149
기정	소로	3	진-6	2	119	238	진입로	숲속생태강의장	동측진입부	
변경	소로	3	진-6	1.5	181	234	진입로	서측경계	숲속쉼터-3	감)4
기정	소로	3	진-7	2	274	548	진입로	남측진입부	숲속생태강의장	
변경	소로	3	진-7	1.5	173	239	진입로	남측경계	숲속쉼터3	감)309
변경	소로	3	진-8	1.5	119	181	진입로	동측경계	산책로9	신규
변경	소로	3	진-9	1.5	10	34	진입로	동측경계	산책로9	신규
변경	소로	3	진-10	1.5	19	25	진입로	동측경계	산책로9	신규
기정	소계				552	1,312	연결로			
변경					923	2,917	연결로			증)1,605
기정	소로	3	연-1	3	178	536	연결로	진입광장	꽃담산책정원	
변경	소로	3	연-1	1.5	91	137	연결로	산책로11	진입로1	감)399
기정	소로	3	연-2	3	20	60	연결로	꽃담산책정원	진입로3	
변경	소로	3	연-2	1.5	94	141	연결로	진입로1	연결로17	증)81
기정	소로	3	연-3	2	187	375	연결로	진입로1	체육공원	
변경	소로	3	연-3	1.5	177	246	연결로	진입로1	진입로1	감)129
기정	소로	3	연-4	2	98	197	연결로	산책로1	진입로4	
변경	소로	3	연-4	1.5	60	90	연결로	서측경계	진입로1	감)107
기정	소로	3	연-5	2	22	49	연결로	체육공원	산책로3	
변경	소로	3	연-5	1.5	51	77	연결로	숲속음악당	연결로6	증)28
기정	소로	3	연-6	2	47	95	연결로	진입로4	체육공원	
변경	소로	3	연-6	1.5	110	165	연결로	산책로1	숲속쉼터-1	증)70
변경	소로	3	연-7	1.5	45	70	연결로	연결로3	숲속쉼터-1	신규
변경	소로	3	연-8	1.5	60	90	연결로	숲속쉼터-1	산책로3	신규
변경	소로	3	연-9	1.5	38	58	연결로	연결로8	연결로3	신규
변경	소로	3	연-10	1.5	15	20	연결로	주차장-1	연결로17	신규
변경	소로	3	연-11	3.5	79	124	연결로	주민운동시설-1	진입로1	신규
변경	소로	3	연-12	1.5	57	87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2	신규
변경	소로	3	연-13	1.5	14	30	연결로	연결로2	주민운동시설-1	신규
변경	소로	3	연-14	1.0	32	46	연결로	산책로14	진입로1	신규
변경	소로	3	연-15	2.0	72	108	연결로	진입로4	주민운동시설-1	신규
변경	소로	3	연-16	1.5	38	79	연결로	주민운동시설-1	산책로13	신규
변경	소로	3	연-17	1.5	201	306	연결로	산책로10	주민운동시설-1	신규
변경	소로	3	연-18	2.0	33	53	연결로	산책로10	연결로17	신규
변경	소로	3	연-19	2.0	73	169	연결로	연결로17	산책로13	신규
변경	소로	3	연-20	2.0	101	187	연결로	연결로19	연결로21	신규
변경	소로	3	연-21	1.0~2.0	82	116	연결로	동측경계	산책로13	신규
변경	소로	3	연-22	1.0	68	79	연결로	산책로13	진입로6	신규
변경	소로	3	연-23	1.5	139	190	연결로	산책로9	산책로13	신규
변경	소로	3	연-24	1.5	73	110	연결로	동측경계	산책로9	신규
변경	소로	3	연-25	1.5	92	139	연결로	산책로9	산책로12	신규

기정	소계				833	1,681	산책로			
변경					2,978	4,726	산책로			증)3,045
기정	소로	3	산-1	2	251	508	산책로	꽃담산책정원	야생초화원	
변경	소로	3	산-1	3.5	61	233	산책로	진입로1	숲속음악당	감)275
기정	소로	3	산-2	2	383	767	산책로	체육공원	산책로3	
변경	소로	3	산-2	1.5	165	230	산책로	시니어운동놀이터	산책로3	감)537
기정	소로	3	산-3	2	199	406	산책로	체육공원	숲속생태강의장	
변경	소로	3	산-3	1.5	264	296	산책로	주민운동시설-2	산책로5	감)110
변경	소로	3	산-4	1.5	98	147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5	신규
변경	소로	3	산-5	1.5	286	330	산책로	서측경계	연결로3	신규
변경	소로	3	산-6	1.5	142	213	산책로	서측경계	진입로4	신규
변경	소로	3	산-7	1.5	203	285	산책로	진입로4	진입로6	신규
변경	소로	3	산-8	1.5	393	425	산책로	진입로6	산책로9	신규
변경	소로	3	산-9	1.5	487	631	산책로	숲속쉼터-3	동측경계	신규
변경	소로	3	산-10	3.0	124	324	산책로	동측경계	동측경계	신규
변경	소로	3	산-11	3.0	174	522	산책로	동측경계	주차장-1	신규
변경	소로	3	산-12	1.5	222	304	산책로	산책로9	전망쉼터-2	신규
변경	소로	3	산-13	1.5	298	411	산책로	진입로6	주민운동시설-1	신규
변경	소로	3	산-14	1.5	40	143	산책로	주민운동시설-1	진입로1	신규
변경	소로	3	산-15	1.5	200	201	산책로	주민운동시설-2	산책로5	신규
변경	소로	3	산-16	1.5	21	31	산책로	서측경계	산책로15	신규

2) 예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계		29,823	100.00%
시설부지면적	기 정	11,678	39.16%
	변 경	11,080	37.15%
녹지면적	기 정	18,145	60.84%
	변 경	18,743	62.85%

나. 세부시설 총괄표(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29,823	100.00	법 : 40%이하
시설면적	기정	11,678	39.16	
	변경	11,080	37.15	감)598
도로및광장	기정	2,509	8.41	
	변경	2,307	7.74	감)202
조경시설	기정	7,765	26.04	
	변경	5,658	18.97	감)2,107
휴양시설	기정	665	2.23	
	변경	1,170	3.92	증)505
운동시설	기정	-	-	
	변경	683	2.29	증)683
교양시설	기정	-	-	
	변경	-	-	-
편익시설	기정	739	2.48	
	변경	1,262	4.23	증)523
녹지 및 기타	기정	18,145	60.84	
	변경	18,743	62.85	증)598

다.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증감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9,823	29,823	11,678	11,080	감)598	1	1	51	51	51	51	
도로 및 광장	소계		2,509	2,159	2,509	2,159	감)202	-	-	-	-	-	-	
	도로		1,839	1,773	1,839	1,773	증)82	-	-	-	-	-	-	
	진입광장1	가-1	122	37	122	37	감)85	-	-	-	-	-	-	
	진입광장2	가-2	548	43	548	43	감)505	-	-	-	-	-	-	
	커뮤니티광장	나	-	306	-	306	증)306	-	-	-	-	-	-	
	없음벽	1	-	-	-	-	-	-	-	-	-	-	-	
조경 시설	소계		7,765	5,658	7,765	5,658	감)2,107	-	-	-	-	-	-	
	잔디광장-1	다-1	4,222	590	4,222	590	감)3,632	-	-	-	-	-	-	
	잔디광장-2	다-2	-	427	-	427	증)427	-	-	-	-	-	-	
	과수서리정원		2,110	-	2,110	-	감)2,110	-	-	-	-	-	-	
	단풍테마숲	라	-	2,721	-	2,721	증)2,721	-	-	-	-	-	-	
	암하리생태공원	마	1,433	1,920	1,433	1,920	증)487	-	-	-	-	-	-	
	벤치	2	-	-	-	-	-	-	-	-	-	-	-	
	그네의자	3	-	-	-	-	-	-	-	-	-	-	-	
	플랜터의자	4	-	-	-	-	-	-	-	-	-	-	-	
	물레방아	5	-	-	-	-	-	-	-	-	-	-	-	
폭기분수	6	-	-	-	-	-	-	-	-	-	-	-		
관찰데크	7	-	-	-	-	-	-	-	-	-	-	-		
휴양 시설	소계		665	1,170	665	1,170	증)505	-	-	-	-	-	-	
	전망쉼터1	바-1	665	272	665	272	감)393	-	-	-	-	-	-	
	전망쉼터2	바-2	-	63	-	63	증)63	-	-	-	-	-	-	
	휴게쉼터1	사-1	-	169	-	169	증)169	-	-	-	-	-	-	
	휴게쉼터2	사-2	-	82	-	82	증)82	-	-	-	-	-	-	
	휴게쉼터3	사-3	-	288	-	288	증)288	-	-	-	-	-	-	
	휴게쉼터4	사-4	-	248	-	248	증)248	-	-	-	-	-	-	
	시크릿가든	아	-	48	-	48	증)48	-	-	-	-	-	-	
	전망정자	8	-	-	-	-	-	-	-	-	-	-	-	
	연식파고라	9	-	-	-	-	-	-	-	-	-	-	-	
파고라	10	-	-	-	-	-	-	-	-	-	-	-		
운동 시설	소계		-	683	-	683	증)683	-	-	-	-	-	-	
	멀티코트-1	자	-	312	-	312	증)312	-	-	-	-	-	-	
	멀티코트-2	차	-	306	-	306	증)306	-	-	-	-	-	-	
	주민운동시설	카	-	65	-	65	증)65	-	-	-	-	-	-	
	체력단련시설	11	-	-	-	-	-	-	-	-	-	-	-	
	음수전	12	-	-	-	-	-	-	-	-	-	-		
편익 시설	소계		739	1,262	739	1,262	증)523	1	1	51	51	51	51	
	주차장1	파-1	688	640	688	640	감)48	-	-	-	-	-	-	
	주차장2	파-2	-	571	-	571	증)571	-	-	-	-	-	-	
	화장실	하	51	51	51	51	-	1	1	51	51	51	51	
	이동식화장실	13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8,145	18,743	-	-	증)598	-	-	-	-	-	-	

라.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487	1,839				
변경	총계				1,029	1,921				증)82
기정					38	119	진입로			
변경	소계				356	767	진입로			증)648
기정	소로	3	진-1	3	38	119	진입로	동측진입부	연결로1	
변경	소로	3	진-1	2.0~8.0	95	280	진입로	진입광장1	휴게쉼터1	증)161
변경	소로	3	진-2	1.5	37	55	진입로	서측경계	휴게쉼터1	신규
변경	소로	3	진-3	2.0	91	182	진입로	주차장1	전망쉼터	신규
변경	소로	3	진-4	1.5~12.0	67	148	진입로	동측경계	산책로1	신규
변경	소로	3	진-5	1.5	66	102	진입로	진입광장2	산책로1	신규
기정					209	1,002	연결로			
변경	소계				193	419	연결로			감)583
기정	소로	3	연-1	5	209	1,002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변경	소로	3	연-1	1.5	58	88	연결로	진입로1	진입로2	감)914
변경	소로	3	연-2	1.5	74	112	연결로	진입로3	진입로4	신규
변경	소로	3	연-3	1.5	54	81	연결로	전망쉼터	산책로1	신규
변경	소로	3	연-4	1.5	37	65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신규
변경	소로	3	연-5	1.5	44	73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신규
기정					240	718	산책로			
변경	소계				480	735	산책로			증)17
기정	소로	3	산-1	3	240	718	산책로	연결로1	남측경계	
변경	소로	3	산-1	3.5	480	735	산책로	단풍테마숲	진입로3	증)17

3) 9호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계		33,468	100.00%
시설부지면적	기 정	12,663	37.84%
	변 경	13,383	39.99%
녹지면적	기 정	20,805	62.16%
	변 경	20,085	60.01%

나. 세부시설 총괄표(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33,468	100.00	법 : 40%이하
시설면적	기정	12,663	37.84	
	변경	13,383	39.99	증)720
도로및광장	기정	8,580	25.64	
	변경	8,960	26.77	증)380
조경시설	기정	818	2.44	
	변경	884	2.64	증)66
휴양시설	기정	522	1.56	
	변경	796	2.38	증)274
유희시설	기정	402	1.20	
	변경	402	1.20	
운동시설	기정	1,318	3.94	
	변경	1,318	3.94	-
교양시설	기정	-	-	
	변경	-	-	-
편익시설	기정	33	0.10	
	변경	33	0.10	-
관리시설	기정	990	2.96	
	변경	990	2.96	-
녹지 및 기타	기정	20,805	62.16	
	변경	20,085	60.01	감)720

다.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증감	건축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3,468	33,468	12,663	13,383	증)720	1	1	1,130	1,130	3,390	3,390	
도로 및 광장	소계		8,580	8,960	8,580	8,960	증)380							
	도로		6,296	6,296	6,296	6,296								
	체육센터광장	7-1	991	991	991	991								
	진입마당1	7-2	42	42	42	42								
	진입마당2	7-3	85	85	85	85								
	상징광장	7-4	648	648	648	648								
	휴게광장	7-5	252	252	252	252								
	삼교상징광장	7-6	266	266	266	266								
이벤트광장	7-7	-	380	-	380	증)380								
조경 시설	소계		818	884	818	884	증)66							
	전망광장	1-1	115	115	115	115								
	바닥분수광장	1-2	517	517	517	517								
	모임광장	1-3	186	186	186	186								
	철길초화원	1-4	-	66	-	66	증)66							
	바닥분수	가	-	-	-	-								
	연결형과고라	나	-	-	-	-								
	شط다리조형물	다	-	-	-	-								
	삼교인물조형물	라	-	-	-	-								
	과고라	마	-	-	-	-								
	등벤치	바	-	-	-	-								
스윙벤치	사	-	-	-	-									
휴양 시설	소계		522	796	522	796	증)274							
	사과쉼터1	2-1	50	50	50	50								
	사과쉼터2	2-2	128	128	128	128								
	휴게쉼터1	2-3	38	38	38	38								
	휴게쉼터2	2-4	75	75	75	75								
	휴게쉼터3	2-5	32	32	32	32								
	휴게쉼터4	2-6	101	101	101	101								
	휴게쉼터5	2-7	2	2	2	2								
	휴게쉼터6	2-8	2	2	2	2								
	휴게쉼터7	2-9	2	2	2	2								
	휴게쉼터8	2-10	2	2	2	2								
	휴게쉼터9	2-11	4	4	4	4								
	휴게쉼터10	2-12	4	4	4	4								
	휴게쉼터11	2-13	4	4	4	4								
	삼교담소가든	2-14	78	78	78	78								
다목적휴게쉼터	2-14	-	274	-	274	증)274								
야외테이블	아	-	-	-	-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증감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희 시설	소계		402	402	402	402								
	기차테마놀이터	3-1	402	402	402	402								
	조합놀이대	차	-	-	-	-								
	흔들놀이대	차	-	-	-	-								
	시이소	카	-	-	-	-								
	신호등게임시설	타	-	-	-	-								
	유아놀이대	파	-	-	-	-								
운·동시 시설	소계		1,318	1,318	1,318	1,318		1	1	1,130	1,130	3,390	3,390	
	삽교국민체육센터	4-1	1,130	1,130	1,130	1,130		1	1	1,130	1,130	3,390	3,390	
	건강마당1	4-2	29	29	29	29								
	건강마당2	4-3	116	116	116	116								
	건강마당3	4-4	43	43	43	43								
	체력단련시설	하	-	-	-	-								
편·익시 시설	소계		33	33	33	33								
	자전거보관소	5-1	10	10	10	10								
	자전거보관소	5-2	8	8	8	8								
	자전거보관소	5-3	15	15	15	15								
	자전거거치대	거	-	-	-	-								
관·리시 시설	소계		990	990	990	990								
	주차장1	6-1	545	545	545	545								
	주차장2	6-2	445	445	445	445								
녹·지 및 기타	소계		20,805	20,085	20,805	20,085	감)720							
	녹지 및 기타		20,805	20,085	20,805	20,085	감)720							

라.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번호	번호	번호폭원(m)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총계	-	-	-	-	2,313.0	6,296.0			
기정	중로	2	3	12	15.0	180.0	도시계획도로	중(보)로 2-3	중(보)로 2-3
기정	중로	2	11	12	9.0	108.0	도시계획도로	중(보)로 2-11	중(보)로 2-11
기정	소로	1	8	10	10.0	100.0	도시계획도로	소(집)로 1-8	소(집)로 1-8
기정	소로	2	16	8	6.0	48.0	도시계획도로	소(국)로 2-16	소(국)로 2-16
기정	소로	2	17	8	7.0	56.0	도시계획도로	소(국)로 2-17	소(국)로 2-17
기정	소로	3	1	6	55.0	330.0	시설연결로	소(국)로 2-29	소(보)로 1-13
기정	소로	3	2	2.5	8.0	20.0	시설연결로	휴게광장	소로 3-7
기정	소로	3	3	5	46.0	230.0	시설연결로	소로 3-26	바닥분수광장
기정	소로	3	4	5	44.0	220.0	시설연결로	바닥분수광장	소로 3-1
기정	소로	3	5	4.5	146.0	657.0	산책로	중(보) 2-3	소(국)로 2-16

구 분	등 급	류별번호	번호	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 능	기 점	중 점
기정	소로	3	6	4.5	128.0	576.0	산책로	소(국)로 2-16	휴게광장
기정	소로	3	7	4	15.0	60.0	산책로	중(보)로 1-3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8	3.2	10.0	32.0	산책로	소로 3-17	산책로 5
기정	소로	3	9	3.2	5.0	16.0	산책로	중(보)로 1-3	소로 3-18
기정	소로	3	10	3	64.0	192.0	산책로	산책로 3	소로 3-23
기정	소로	3	11	3	8.0	24.0	산책로	주차장2	소로 3-25
기정	소로	3	12	3	35.0	105.0	산책로	진입마당2	바닥분수광장
기정	소로	3	13	3	47.0	141.0	산책로	바닥분수광장	소로 3-1
기정	소로	3	14	3	5.0	15.0	산책로	소로 3-5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15	3	5.0	15.0	산책로	소로 3-5	남측경계
기정	소로	3	16	3	8.0	24.0	산책로	남측경계	삼교상징광장
기정	소로	3	17	2.6	255.0	663.0	산책로	소로 3-7	녹지
기정	소로	3	18	2	65.0	130.0	산책로	소로 3-17	소로 3-17
기정	소로	3	19	2	36.0	72.0	산책로	진입마당1	전망광장
기정	소로	3	20	2	10.0	20.0	산책로	산책로 1	전망광장
기정	소로	3	21	2	9.0	18.0	산책로	소(보)로 1-13	전망광장
기정	소로	3	22	2	49.0	98.0	산책로	전망광장	산책로 3
기정	소로	3	23	2	56.0	112.0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0
기정	소로	3	24	2	360.0	720.0	산책로	중(보)로 2-11	중(보)로 2-11
기정	소로	3	25	2	63.0	126.0	산책로	소로 3-12	바닥분수광장
기정	소로	3	26	2	22.0	44.0	산책로	진입마당2	건강마당2
기정	소로	3	27	2	25.0	50.0	산책로	건강마당2	바닥분수광장
기정	소로	3	28	2	127.0	254.0	산책로	소(집)로 1-8	중(보)로 2-3
기정	산로	산책로-	1	1.5	258.0	387.0	산책로	진입마당1	전망광장
기정	산책로	산책로-	2	1.5	204.0	306.0	산책로	진입마당1	중(보)로 2-1
기정	산책로	산책로-	3	1.5	18.0	27.0	산책로	산책로1	건강마당1
기정	산책로	산책로-	4	1.5	50.0	75.0	산책로	소로 3-7	소로 3-17
기정	산책로	산책로-	5	1.5	30.0	45.0	산책로	중(보)로 1-3	소로 3-17

예산군 고시 제2023-83호

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주교리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 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3. 3. 30.

예 산 군 수

1.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	6	국지 도로	627	중로1-15	중로3-5	일반 도로	-	충남고 제89호 ('78.04.12.)	경 미 한 변경
변경	소로	1	6	6	국지 도로	627	중로1-15	중로3-5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6	소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면적변경 : 감 3.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읍 예산리 26-6번지 도로구역 제외에 따른 도로편입면적 변경 (감 3.4m²)

■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광장	교차점 광장	대로3-2호선과 중로3-2호선의 교차점	9,176	충남고 제197호 (‘85.12.27.)	경미한 변경
변경	③	광장	교차점 광장	대로3-2호선과 중로3-2호선의 교차점	8,975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광장명	변경후 광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산읍 광장 3호	예산읍 광장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 면적변경 : 감 20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구역(국도)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감 201m²)

2.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축척 1/1,200)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군 공고 제2023-553호**예산 군계획시설[산성역사공원, 도로(소) 3-88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예산 군계획시설사업(산성역사공원, 도로:3-88호)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건축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3. 30.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275-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예산 군계획시설(산성역사공원, 도로(소)3-88호) 공사
- 명 칭 : 예산 산성공원내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공사

다. 사업개요

- 주차공간 조성 및 도로정비: 2,471m²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0.10.22. ~ 2021.05.18.

예산군 공고 제2023-560호**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따른 열람공고**

1.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0.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예산읍	복합문화 복지센터 광장 정비공사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 955.6㎡ 다목적 광장 1445.1㎡ 휴게쉼터 조성 1,133.8㎡ 어르신 놀이터 1,862㎡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 : (변경전) 2022.03.10. ~ 2022.12.31.

(변경후) 2022.03.10. ~ 2024.12.31.

마. 열람기간 : 2023. 3. 30. ~ 2023. 4. 13.(14일간)

바. 열람장소 :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아. 관계도서 : 생략(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번호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298	대	97,858.3	3,534.5	예산군					